## 5. 학생지도위원회내규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각 위원회설치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- 제2조(구성)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, 교양학부장 및 학과장 그리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 (2019.2.8. 개정)(2020.4.21. 개정)
  - ② 학생지원처장이 본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생과에서 그 실무를 담당한다. (2019.2.8.개정)
- 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생지원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. (2019.2.8.개정)
  - 1. 학생들의 과외활동 사항
  - 2. 학생단체의 예산, 결산심의 및 보조금 책정에 관한 사항
  - 3. 학생의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
  - 4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  - 5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- 제5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1. 과외활동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
  - 2. 출판분과위원회
  - 3. 상벌분과위원회
  - 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도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. (2019.2.8.개정)
- 제6조(분과위원회의 임무) ① 과외활동 및 예결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 (2019.2.8.개정)
  - 1.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학생단체의 예산결산심의 및 보조금 책정에 관한 사항
  - 3. 과외활동 내용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- 4. 학생단체의 시설과 비품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- 5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  - ② 출판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 (2019.2.8.개정)
  - 1. 학생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에 관한 사항
  - 2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  - ③ 상벌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 (2019.2.8.개정)
  - 1.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
  - 2.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
  - 3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
- 제7조(회의)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, 또는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(2019.2.8.개정)
- 제8조(회의결과의 공개) ① 학생지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2019.2.8.개정)
  - ② 학생지원처장은 필요에 따라서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다만 사전에 해당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- 제9조(회의록) 학생지원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시 전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- 제10조(관례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개정)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(재적위원 과반수 찬성)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